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3. 24 선고 2022가단789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제

변 론 종 결 2023. 2. 17.

판 결 선 고 2023. 3. 24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65,389,718원, 피고 C, D, E, F는 각 43,593,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

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망 G로부터 차용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한 금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망 G은 원고로부터 2008. 10. 25.경부터 2016. 12. 21.경까지 합계 239,762,300원을 지급받았다. 그러나 위 합계금을 망 G이 말하는 것처럼 외상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망 G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편취한 돈이다. 따라서 망 G이 위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 단

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7. 4. 17. G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8705호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2003. 12. 9.부터 2007. 3. 30.까지 차용한 26,630,000원을 G이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113,400,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8. 10. 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, 원고는 2019. 11. 29. 다시 G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합20330호로 G이 원고로부터 외상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G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편취한 231,604,9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금원 중 113,400,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였고, G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1. 1. 15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

수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와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이미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호